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의2제2항).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그 밖에 장애인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함(안 제59조의4제2항).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기준에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설치를 명시하고,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함(안 제59조의11제2항 및 안 제59조의20 신설).

II. 검토의견

-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안 제59조의4제2항¹⁾ 제25호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를 추가하면서 “장애인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규정하고 있음.

-
- 1)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4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에 대한 해석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현행법은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하고(현행법 제88조의2제2항²⁾), 신고의무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현행법 제90조제3항³⁾)하고 있어 신고의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2) 제88조의2(가중처벌)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3) 제90조(과태료)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 4)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5. 그 밖에 장애인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4)에 따른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III. 관계기관 의견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추가하는 안 제59조의4제2항제24호에 대하여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영리 목적의 민간 기업으로, 장애인에게 보건·의료·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의무대상자와는 성격이 다르고, 표준사업장 종사자 대부분은 중증·발달장애 근로자인바 이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피해당사자에게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u><신 설></u>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u>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u>

(전문위원 박 동 찬)